

【예금거래기본약관】

현 행	개 정(안)
<p>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저축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p> <p>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p> <p>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p> <p>② (생략)</p> <p><신설></p>	<p>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 ----- ----- ----- -.</p> <p>1. ----- ----- -----</p> <p>2.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p>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상호인플러스저축은행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전에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②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1)

③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서명 또는 인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거래처는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상호저축은행은 부기금액과 상관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상호저축은행이 결제를 확인한 때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

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발행인이 지급거절할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자) ①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저축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②제①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할 수 있다.

③예금계약은 예금이 제1항 각호에 따라 휴면예금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예금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같다. <신설 2023.6.27.>

[본조 신설 2017.9.27.]

제10조(지급이나 해지청구) ①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1.)

②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이자를 찾을 때는 그 약관 또는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열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②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상호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개정 2013.5.31>

②상호저축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외에 상호저축은행이 임의로 예금을 해

지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 비밀보장)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 변경)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및 기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8.30>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전자우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예금주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개정 2022.8.30>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⑤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1조(약관적용의 우선순서) ①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③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위법계약의 해지) 거래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현 행	개 정(안)
<p>제2조(이자)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예금의 이자는 <u>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u>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u>매월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u>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p> <p>③ (생 략)</p>	<p>제2조(이자) ① ----- ----- <u>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u> ----- ----- -----.</p> <p>② -----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 -----.</p> <p>③ (현행과 같음)</p>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개정 2018.4.20>

②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20.>

제2조(이자) ①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개정 2018.4.20., **2023.6.2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1.24.> <개정 **2023.6.27.**>

③제1항의 예금이자 는 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합니다. <개정 01.6.10, **2018.4.20., 2019.1.24.**>

제3조(거래중지계좌) ①상호저축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이자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9.27., 2018.4.20>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신설 2015.9.30.]

②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신설 2018.4.20.>

③거래중지계좌에 대하여 거래처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해지 후 고객 본인명의 계좌(자행·타행 포함)에 입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8.4.20.>

제4조(비과세종합저축 거래) ①이 예금종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5.2.16, 2018.4.20**>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개정 **2015.2.16, 2018.4.20**>

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개정 **2015.2.16, 2018.4.20**>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5.2.16, 2018.4.20**>

제5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신설 13.11.27., **개정 2018.4.20**>

【저축예금특약】

현 행	개 정(안)
<p>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매월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p> <p>③ (생 략)</p>	<p>제1조(이자) ① -----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 ----- -----.</p> <p>②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 -----.</p> <p>③ (현행과 같음)</p>

저축예금특약

-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결산기준일로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개정 01.6.10, 2002.7.1., 2019.1.24., 2023.6.27.>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1.24.> <개정 2023.6.27.>
- ③이자계산은 입금액마다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한 다음,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을 뺍니다. 다만,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일의 예치금액에 따른 이율로 셈합니다. <개정 01.6.10., 2019.1.24.>

【기업자유예금특약】

현 행	개 정(안)
<p>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u>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u>을 결산 기준일로하여 익일 에 원금에 더합니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매 월 일정한 날(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p> <p>③ (생 략)</p>	<p>제1조(이자) ① ----- 매분 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 ----- -----.</p> <p>② -----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 -----.</p> <p>③ (현행과 같음)</p>

기업자유예금특약

- 제1조(이자) ①이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월 중 일정한 날 또는 매월 일정한 날을 결산 기준일로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개정 01.6.10., 2019.1.24., 2023.6.27.>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별 약관에서 정하는 날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9.1.24.> <개정 2023.6.27.>
- ③이자계산은 예치기간별 차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며, 예금잔액별 차등이율 적용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01.6.10, 02.8.20., 2019.1.24.>

특정채무담보	제 예
근 담 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년 월 일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보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① 피담보 채무의 표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래 약 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 액 :	금		원	
다. 상 환 기 일 :	년	월	일	
라. 이 자 율 :	연		%	
마. 지연 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 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채권최고액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가.

금	원
---	---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근저당권 결산기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3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 ①(근)저당물건의 실체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②(근)저당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 ①설정자가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 ②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 ①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 ②설정자가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보험 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④ (근)저당물건이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8.12.17.>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3.6.27.>

②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12.17.>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17.>

④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12.17.>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개정 2018.12.17.>

제7조 (회보와 조사)

-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 ② 특정채무담보인 경우,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음과 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것을 설정자에게 통보합니다.

제8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정 2011.8.1>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개정 2011.8.1>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분담

③ <삭 제> <개정 2011.8.1>

④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개정 2011.8.1>

⑤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9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0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사항)

설정자 : (인)

(근)저당물건 목록 :

대 상 목 적 물 의 표 시	순 위

한정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여 신 분 류 표

○ 고객명 : 서명 또는 (인)

○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의 범위(해당란 □에 “√” 표기)

피담보채무의 범위	내 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자금대출	대출대상, 자금용도 등 대출 취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대출
<input type="checkbox"/> 어음할인	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저축은행이 만기일까지의 소정이자(할인료)를 어음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할인의뢰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대출
<input type="checkbox"/> 계약금액내대출	계금·부금·적금 가입자중 미급부(대출)좌에 대한 대출
<input type="checkbox"/> 예적금담보대출	당해 저축은행에 계·부금, 거치식예금·적립식예금, 표지어음에 가입한 자로서 동 예금 등을 담보 취득후 실시하는 대출
<input type="checkbox"/> 종합통장대출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종합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약정을 맺은 후 예금잔액을 초과한 인출 청구시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금시 대출이 자동상환되며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대출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대출	주택의 신축·구입·개량(증축)·임차자금 용도의 대출
<input type="checkbox"/> 외상채권대출	거래처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채권과 외상매출채권을 저축은행이 매입하여 평균만기일에 일괄지급하고 또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매입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만기일전에 대출을 취급하며, 이에 부대하여 회계업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input type="checkbox"/> 기타대출	상기 이외의 대출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자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저축은행은 담보제공부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채무담보	공용
근 담 보	

(근)질권 설정 계약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용)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근)질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 붉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앞

년 월 일

(근)질권설정자(담보제공자)
주 소

(인)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담보목적물의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앞으로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① 채무자 성명 :
주소 :

②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래약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액 :	금				원
다. 상환기일 :	년	월	일		
라. 이자율 :	연	%			
마. 지연 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 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③ 채권최고액 (근질권인 경우에 한함)

금		원
---	--	---

④ 근질권 결산기 (근질권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	------------------------

지정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①(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

②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3조 (위험부담·면책조항)

①설정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한 담보목적물(담보증서, 통장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 또는 증권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담보목적물(담보증서, 통장 등)상의 인영·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③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 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못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담보물건이 동산인 경우))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②설정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체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 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①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총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8.12.17.>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3.6.27.>**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12.17.>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제6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8조 (비용부담)

①채권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V”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채권 매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무사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말소(저당권 해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황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서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점유·관리·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9조 (특약사항)

설정자

(인)

질권의 목적물의 목록 (예금 등) :

(단위 : 원)

종 별	증서번호	명의인 수익자 (위탁자)	금액 또는 계 약 액 목 표 액	설정일현재 입금 부금 누계액 또는 목적신탁 기적립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	.
				
					.	.
				
					.	.

주의 : 신탁의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의 성명을 ()안에 기재하십시오.

담보목적물의 목록 (동산·지명채권·유가증권) :

주의 :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는 증권의 종류, 형식, 권면액, 수량, 발행처, 발행년월일 등으로, 동산의 경우는 품명, 종류, 규격, 기번호, 품질, 수량, 포장종류, 제조년월일 등으로 그 물건 또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십시오.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질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 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채무담보	공용
근 담 보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거래, 거래, 거래 </div>
-------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 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	--

② 채권최고액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가.

금	원
---	---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으로 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
 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설정계약으로 보지 않기로 합니다.

③ 양도담보권 결산기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년 월 일
-------	-----------------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도담보 결산기를 지정 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 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 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도담보 결산기를 지 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 ① 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어온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 (담보목적물의 보존 등)

- ① 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그 예방 또는 침해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하고 채권자에게 곧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설정자는 권리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② 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 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 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다른 담보의 제공)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담보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실효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담보가치의 유지)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설정자가 상당액의 물건을 곧 보충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 ①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어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이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 ①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총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8.12.17.>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3.6.27.>

②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8.12.17.>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제9조 (담보목적물의 인도·대리처분)

- ①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 ②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10조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훼손·공용징수·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배상금·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다.

제11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조사)

채권자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정자는 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① 양도담보권의 설정·보전·행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존·관리에 드는 각종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V"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채권 매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무사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말소(저당권 해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황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서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점유·관리·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1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 의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사항)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 :

(인)

--	--

양도담보목적물 목록

소 재 지		
보관참고명 및 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보 험	회 사 명	
	종 별	
	금 액	

소 재 지		
보관참고명 및 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보 험	회 사 명	
	종 별	
	금 액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양도담보란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원재료·제품, 기계·기구 등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원재료·제품, 기계·기구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